장애학생 복지 지원계획

2021. 3

학 생 지 원 팀

2021학년도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계획(안)

1. 목 적

□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수행 지원

□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내 이동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

□ 장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

□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

2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□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장 의무 강화

- 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‘07.5.25. 제정)”의 시행에 따라, 장애학생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장 의무가 신설
- “장애학생차별금지 및 권리주체 등에 관한 법률(‘07.4.11. 제정)”의 시행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

□ 종합적인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방안 마련 필요

- 우리대학도 머지않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,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 구축, 진로 및 취업지원, 장애대학생 고등 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장애학생 지원방안이 지속적 개선 필요

3. 추진 목표 및 현황

□ 추진 목표: 장애인의 교육복지 및 학습권 보장

□ 추진 현황 및 계획

추진 내용	세 부 내 용
고등교육 기회 확대	- 입학제도 검토 및 장학금 지급 - 대학내 학생회관 편의시설 개선
교수·학습 지원	- 학습권 보장 및 지원 - 학습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
취업지원 강화	- 취업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

4. 추진 현황 및 계획

o 편의시설 확충

- 대학건물 신축시 편의시설 의무화 준수

※ 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, 설비 등 정당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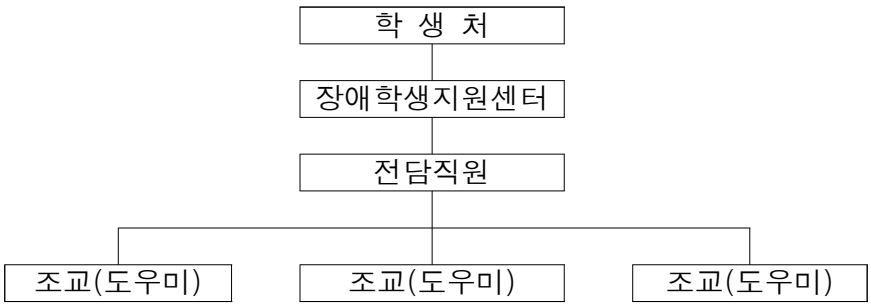
편의제공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

- 대학 캠퍼스 중 학생회관이 장애인 학생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부족함.
 (※ 엘리베이터(X), 계단에 장애인 리프트(X))

□ 장애학생이 재학 시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 구축(안)

o 전담부서(장애학생지원센터) 설치 추진

- 본교 장애학생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함.
- 조직도(안)



※ 장애인 등에 관한 법령상

"장애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, 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**전담직원**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"

※ 조교(도우미)는 근로학생 형태의 생활보조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

- 우리 대학은 각 부서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지원함 6명(현재 인사발령된 직원)

부서명	성명	담당업무
항공경영대학 행정실	현종문	장애학생지원
공과대학 행정실	박성훈	
교무팀	이준희	
학생지원팀	임지영	
대학원 행정실	손봉희	
교무팀	곽미정	

o 생활지원

- 기숙사 우선배정

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숙사를 우선 배정한다.

- 오리엔테이션 실시

 장애학생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신입생

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

-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
 장애학생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
- 멘토링 제도 운영
 시각, 청각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1:1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.
- 상담서비스 운영
 관련부와 연계하여 필요시 항상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o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 지원서비스 확대

- 지역 장애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.

□ 교수학습 지원

o 학습권 보장 및 지원

-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 위원회를 통해, 장애학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o 학습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활용

-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및 보조 공학기기를 구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.
-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 또는 적절한 교수·학습 보충자료를 지원한다.

□ 취업지원 강화

o 취업관리 시스템 구축

o 장애 졸업생 대상으로 상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

5. 부서별 세부 업무 분장

구 분	주요 업무	비 고
학생지원팀	- 기본계획 작성 및 시행 - “장애학생지원 위원회” 운영 - “장애학생 운영규정” 운영 - 장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- “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” 신청 (장애학생이 있을 시 신청 예정)	※ 장애학생지원 센터가 설치되면 업무 이관
입학관리팀	- 장애학생 선발(장애학생특별전형) 검토	
기획홍보팀	- 조직 편성 (장애학생지원센터) - 운영규정 반영	※ 장애학생이 10명이상 재학 시 필요
미래교육혁신원	- 장애학생 교수·학습법 개발 및 지원 - 장애학생 멘토링제도	
시 설 팀	-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및 점검	
대학일자리센터	- 취업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	